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76р	해설	제으로 보았어서 있습니 것으로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되는 것 인데 어제한 점심사용도 고대를 받는 행보여에 보고 보내 기계를 보내	① 원래 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요건인 그 친고죄의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한정하는가는 형사소송절차운영에 관한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은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목적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할 수는 없는것이므로,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취소하였다면이는 친고죄에 대한고소취소로서의효력은 없다. (대판 1999. 4. 15. 96도1922 전합)
		수정 사유	해설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